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시 장 상 권 지 원 과

구미형 온누리페이백 지원사업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구 미 시

구미형 온누리페이백 지원사업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 구미형 온누리페이백 지원사업은 관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소비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여 지역 소비를 유도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임.

나. 기존 민간경상보조 방식은 상인회에 보조금을 교부한 후 다시 운영대행 용역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로, 사업 추진 단계가 이중화되어 있고 매년 용역사가 변경될 경우 사업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기 어려워 사업 전반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다. 또한 사업 규모와 참여 상권이 확대될수록 상인회별 운영역량 차이로 현장 운영 편차가 커질 수 있으며, 상품권 안전관리와 환급자료 검증, 실적관리, 통합 정산 등 사업 전반의 관리 부담도 함께 증가함.

라. 2027년부터 사업대상지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므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경험과 공공성을 갖춘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사무를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구미형 온누리페이백 지원사업 운영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판로 촉진과 홍보지원),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47조(활성화 사업) 등

다. 위탁 사무 내용

(1) 구미형 온누리페이백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2) 참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교육, 안내 등 관리

(3) 권역별 환급소 설치와 운영, 현장 인력 배치, 민원 응대 및 안전관리

(4)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구매증빙 확인 및 환급 처리

(5) 환급관리 시스템 운영, 중복환급 및 부정환급 방지, 일일 환급실적 관리

(6) 온누리상품권 구입, 보관, 불출, 재고 관리 및 잔여분 관리 등

(7) 사업비 집행, 정산, 성과분석,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라.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까지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00백만원 (2027년 기준)

구 분	금액 (백만원)	산출근거
총 계	**2,000**	
온누리상품권 환급금	1,600	구매금액별 환급 지급 재원
사업운영비	320	환급소 운영인력, 환급관리 시스템, 홍보물 제작, 참여점포 관리, 상품권 수불 및 보관 안전관리, 정산·성과분석 등
위탁수수료	80	공기관 위탁 수수료(4%)

※ 상기 산출내역은 의회 동의를 위한 추계안으로, 최종 세부 산출은 2027년도 예산편성 및 위·수탁 협약 체결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바.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일자리경제과-28333(2026. 9. 30.)

- 대규모 환급재원의 안전관리, 대상지역별 환급기준의 통일성, 환급자료 검증 및 정산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사무로서 공공위탁 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3. 부서의견

가. 2026년 사업은 권역별 상인회 보조금 교부와 통합 운영대행 용역을 결합한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나, 2027년 사업비 및 사업대상 지역이 확대될 경우 단순 보조사업 방식만으로는 상품권 수불, 환급자료 검증, 예산집행, 민원 대응, 성과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나.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서 다양한 업무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구미시의 관리감독 아래 사업을 일원화하여 추진하기에 적합함.

다. 따라서 구미형 온누리페이백 지원사업은 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촉진 효과를 높이고, 사업집행의 투명성과 정산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제117조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3)「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47조(활성화 사업) 등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당초예산 2,000백만원(시비) 편성 예정

다.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 감사결과 : 신규 공공위탁 사무로 해당없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회·박람회 개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온누리 상품권 홍보 등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47조(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미형 온누리페이백 지원사업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구미형 온누리페이백 지원사업 운영 사무를 공공위탁함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환급금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위탁운영비 등 세출이 발생함.

2. 비용추계의 전제

(1) 사업비는 1년 / 시비 2,000백만원으로 하며, 국비, 도비, 민간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산정함.

(2) 환급기준, 권역별 배분, 환급소 수, 운영기간 등은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 조정될 수 있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세입	해당없음(a)				
세출	○ 환급금	1,600	1,600	1,600	4,800
	○ 위탁운영비 등	400	400	400	1,200
	소계(b)	2,000	2,000	2,000	**6,000**
□ 총 비용(a-b)		-2,000	-2,000	-2,000	-6,000

4. 재원조달 방안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국 비				
도 비				
시 비	2,000	2,000	2,000	6,000
민 간				
기 타				
합 계	2,000	2,000	2,000	6,000

5.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는 공공위탁 동의를 위한 추계자료로, 향후 예산심의, 세부사업계획, 위·수탁 협약 및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세부 항목별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6. 작성자 : 시장상권지원과 시장활성화팀 박병진 (☎ 480-263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기초	비고
직접비	환급지원금	1,600,000	·온누리상품권 환급금	
	환급사업 개최용역	288,000	·환급소 6개소 운영(행사기간 40일, 설치 및 철거 4일) - 6개소 × 4인 × 44일 × 200천원 = 211,200천원 ·행사 홍보비 - 콘텐츠 제작 및 광고비 운영 1식 = 5,000천원 - 전광판, 옥외홍보물 제작 및 설치 1식 = 5,000천원 ·환급소 임차비 - 6개소 × 3,000천원 × 1.5달 = 27,000천원 ·행사 운영비 - 현장 물품 구매비 및 진행비 등 = 6,800천원 ·물품 임차비(태블릿PC, 계수기, 안내자료 등) 1식=33,000천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000	·환급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식	
소계ⓐ		1,898,000		
간접비	운영비	3,500	·심사수당 : 1회 × 7인 × 6시간 × 60천원 = 2,520천원 ·사무비품, 다과, 우편, 회의비 등 = 980천원	
	여비	1,000	·현장 모니터링, 민원대응을 위한 출장여비	
	전담인력 인건비	17,500	·1인 × 1,750천원 × 10개월 = 17,500천원	
	대행수수료	80,000	·사업비의 4% 정도	
소계ⓑ		102,000		
총계(ⓐ+ⓑ)		2,000,000		

소 관 부 서		시장상권지원과
입 안 자	과 장	윤선목
	팀 장	강명지
	담 당 자	박병진 (480-2632)